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문성혁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‘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’을 ‘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’으로 변경하고 경미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변경 시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하고,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을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으로 용어를 변경(안 제12조, 제35조)
- 나.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(안 제12조의2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

대통령령 제 호
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4항제1호 중 “해양보호구역의 관리기본계획”을 “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)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다른 법령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
2. 단순한 착오, 오기,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
3. 단순 현황 및 통계자료를 수정하려는 경우

제35조제2항제7호 중 “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”을 “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”으로, “수립·시행”을 “수립·변경·시행”으로 한다.

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60

조제2항”을 각각 “법 제60조제3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(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) ① ~ ③ (생략)	제12조(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법 제27조제2항제7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”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	④----- ----- ----- -----.
1. 법 제28조에 따른 <u>해양보호구역의 관리기본계획</u> 에 포함된 시설 등의 설치	1. ----- <u>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</u> ----- -----
2. 3. (생략)	2. 3. (현행과 같음)
⑤ ~ ⑧ (생략)	⑤ ~ ⑧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제12조의2(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)</u>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	1. 다른 법령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
	2. 단순한 착오, 오기,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
	3. 단순 현황 및 통계자료를 수

	<u>정하려는 경우</u>
제35조(권한의 위임) ① (생 략)	제35조(권한의 위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 무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 청장에게 위임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법 제28조에 따른 <u>해양보호</u> <u>구역관리기본계획</u> 의 <u>수립·시</u> <u>행</u>	7. ----- <u>해양보호</u> <u>구역관리계획</u> ----- <u>수립·변</u> <u>경·시행</u>
8. 삭 제	
9. ~ 14. (생 략)	9. ~ 14. (현행과 같음)
제35조의2(업무의 위탁) ① 해양 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.	제35조의2(업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 <u>법 제60조제3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.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	1. -----
2.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	2. -----
3.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서식 지외보전기관의 비용 지원	3. -----
4.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 동물전문구조·치료기관의 비 용 지원	4. ----- -----
5.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	5. -----

보호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실시	----- --
6.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해양 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중 해 양생태계교란생물의 조사 및 제거	6. ----- ----- ----- --
7.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 생물의 관리 중 유해해양생물 의 조사 및 제거	7. ----- ----- -----
8. 법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 구역의 관리	8. ----- -----
9. 법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	9. ----- ----- --
10. 법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 계보전·이용시설의 설치·운 영	10. ----- ----- --
② 시·도지사는 법 제60조제2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.	② ----- <u>법 제60조제3</u> <u>항</u> ----- ----- -----.
1.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련 조 치 중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포획·채취	1. ----- ----- -----
2.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 생물의 관리 중 유해해양생물	2. ----- -----

의 포획·채취	-----
3.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·도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조사·측량 및 관찰	3. ----- ----- ----- ----- --
3의2.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에 따른 시·도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사업	3의2. ----- ----- ----- -----
4. 법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·이용시설의 설치·운영	4. ----- ----- --
5.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 복원대책의 수립·시행	5. ----- ----- --
③·④ (생 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생태과	
연 락 처	044-200-5318